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

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

수신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업체
(경유)

제목 불법 개인용 이동수단 홍보판매 금지 및 단속 알림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원에서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확인 부속서 32(스케이트 보드)에 의거 전동스케이트 보드, 전동 킥보드, 전동이륜 평행차, 전동외륜보드, 전동이륜보드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3. 동 안전기준에 따르면 5가지 개인용이동수단은 최고속도가 25km/h를 넘지않아야 합니다.
4. 그러나, 최근 일부제품의 경우, 25km/h이하로 안전확인 신고를 마친뒤 속도제한을 해제하여 판매하거나 최고속도를 25km/h이상으로 홍보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5. 이는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.
6. 따라서, 2018년 6월 1일 부터 이러한 행위를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온오프라인상에서 집중조사하여 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국가기술표준원장

공업연구관

과장

전결 2018. 5. 25.

협조자

시행 생활제품안전과-1478

접수

우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, (국가기술표준원)

/ <http://www.kats.go.kr>

전화번호 043-870-5352

팩스번호 043-870-5668

/ bethetop@korea.kr

/ 비공개(5)